

Premium Report 제48호  
(2018. 6. 29)

#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현황 및 국내외 사례

 **KICI**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

작성 자 : 홍태선 선임연구원
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31 / E - [hts@kici.re.kr](mailto:hts@kici.re.kr)

- 내용연수란 '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'으로서 민간부문에서는 「법인세법」, 공공부문은 「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조달청 내용연수를 적용
- 그러나 현행 조달청 내용연수의 주요 정보통신설비들은 내용연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
  - 조달청 내용연수는 설비의 진부화, 성능 미달로 인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써 작용하고 있으며,
  - 해외 주요국 사례 및 민간부문의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긴 사용연한으로 규정
-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적용 실태, 관련 선행 연구 결과 등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의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- 민간부문은 「법인세법」에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
  - 정보통신설비는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으로 구분되며, 주로 정액법을 적용
  -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 5, 별표 6에 따르며 모두 5년을 적용
    - ▶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 5년을 적용
    - ▶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전문직별 공사업 5년을 적용

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하한-상한)	구조 또는 자산명
5년(4년~6년)	차량 및 운반구(운수업,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), 공구, 기구 및 비품

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하한-상한)	적용대상자산	
	대분류	중분류
5년 (4년~6년)	건설업	42. 전문직별 공사업

- 공공부문은 「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'조달청 내용연수'에서 세부 지침을 제시
  - 별표 1에서는 차량을 제외한 1,055개 품목에 대한 내용연수를 제시하고 있음
  -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약 7~8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규정

구분	물품분류번호	품명	내용연수
1	10131601	애완동물사육장	10
2	10131702	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	7
3	20101601	광업용스크린	10
4	20101706	쥬크러셔	12
5	20101707	크러싱플랜트	11
6	20101709	볼밀	11
7	20101710	미분쇄기	11
8	20101711	록브레이커	8
9	21101501	쟁기	9
10	21101502	쇄토기	10
11	21101503	관리기	10
12	21101504	제초기	9
- 이하 생략 -			

- 미국은 수정가속상각법(MACRS: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)에 따른 감가상각제도를 적용
  - 상각기간은 내용연수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비용의 회수기간을 의미하지만, 자산별 또는 사업형태에 따른 상각기간을 규정(자산별로 3~25년 등)
  -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과 라디오 및 TV 방송은 5년, 케이블 TV 관련 자산은 7년 등을 적용
    - ▶ 라디오 및 TV 방송에 사용되는 통신관련 자산 : 5년
    - ▶ 케이블 TV(통신 관련 자산, 컨버터, 변조, 분배시스템 등) : 7년
- 일본은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, 상각방법, 내용연수 등을 상세하게 규정
  - 감가상각은 내부거래로 법인의 자의에 맡기면 과세 공평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
  - 일본의 주요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는 기구 및 비품 등의 통신기기는 4~6년, 카메라, 자동판매기, 무인주차관리장치 등은 5년을 적용
    - ▶ 인터폰 및 방송용 설비, 디지털 구내교환설비, 전화설비 등 : 6년
    - ▶ 카메라, 영화촬영기, 자동판매기, 무인주차관리장치 : 5년

- 캐나다는 자본비용공제(CCA:Capital Cost Allowance)방식으로 비용을 공제
  - 자산의 유형별로 자본비용공제 비율을 규정하여 당해 연도 공제액을 산출하는 일종의 정률법 감가상각방식을 적용
  -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들은 약 3~8년 정도의 기간 동안 회계적으로 처리
    - ▶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: 연간 30%를 공제(3.3년)
    - ▶ 전자통신장비, 사무용 정보통신장비 : 연간 20%를 공제(5년)
  
- 호주는 UCA(Uniform Capital Allowance)제도 하에 국세청장이 권장 내용연수를 매년 발표
  - TR 2017/2의 Table A(산업분류별 권장 내용연수)와 Table B(자산별 내용연수)에서 정보통신 주요 설비들은 약 4~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
    - ▶ 번호판 인식 카메라 및 시스템 5년, 주차 안내 자산 7~8년
    - ▶ 조명제어시스템 5년, 전자칠판 6년, 출입통제시스템 5년
    - ▶ CCTV시스템 카메라, 모니터 4년, 스위칭 장비 5년
    - ▶ 보안시스템 5년(패널, 알람, 벨 등), 전화시스템(아날로그, 디지털) 7년 등

## 4

## 한국은행 선행연구 결과

- 한국은행 '자산별 내용연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'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연수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
  - 실제 내용연수 분석을 위해 민간부문의 회계자료(구입시점, 폐기시점, 실측정보, 중고자산 거래 내역 등) 약 6,500건을 분석
  - 국민계정통계의 분류에 부합하도록 60여개로 세분화된 자산단위별 내용연수를 산정
  - 정보통신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연수는 2011년 기준으로 약 6.7~7.5년 수준
    - ▶ 2011년 기준 유선통신기기 6.7년,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7.5년
    - ▶ 2008년 기준 유선통신기기 8.3년,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7.4년

구분	2011년		2008년	
	건수	내용연수	건수	내용연수
유선통신기기	4,396	6.7	255	8.3
무선통신 및 방송장비	2,127	7.5	114	7.4

- ▶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세법상 규정된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현행 공공부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내용연수는 해외 주요국의 내용연수 및 민간부문 법인세법 내용연수 등과 비교하여 기준이 매우 상이함
  - 정보통신 관련 주요물품에 대한 조달청 내용연수는 7~8년 수준임
    - ▶ 보안용 카메라, 감시용 녹화기 또는 녹음기, 유선·디지털 전화기 등 : 8년
    - ▶ 비디오모니터, 교통관제시스템,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: 7년
  -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의 주요 정보통신설비들은 4~6년 수준
  - 민간부문의 법인세법상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
  -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, 조달청 규정 연한 이내에는 설비교체 필요성이 있어도 재해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
  - 정보통신설비는 관련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설비의 진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정부, 공공기관 등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체를 추진(CCTV 화소수 41만→200만 이상)
- ⇒ 현행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하며, 발주기관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제로 작용
- ⇒ 해외 주요국과 민간부문 법인세법의 내용연수 수준인 5년으로 개선이 필요